# [조 사 표]

연구과제명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 및 관리에 관한 연구(I): 예산 및 성과를 중심으로

조 사 명 형사사법 예산 및 쟁점에 관한 인식조사(전문가용)

1

# 형사사법기관의 예산 규모와 구성

Q1 2013년 기준 국가별 GDP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 비율은 1.28%입니다. (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볼 때,) 귀하는 우리나라의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[변수 A1]

[참고] 국가별 GDP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(public order & safety) 부문에 대한 정부(general government)지출

국가	GDP 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에 대한 정부지출(%)
미국	2.09
영국	2.12
독일	1.56
일본	1.33
대한민국	1.28

출처: OECD(www.oecd.org)

- ① 전혀 늘리지 않아도 된다
- ② 별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
- ③ 현행수준이 적절하다
- ④ 조금 늘려야 한다
- ⑤ 많이 늘려야 한다

Q2	다음은 각 기관별 주요 사업과 2015년 예산배분율 입니다. 다음 분야들 중 <u>향후 예산 배분이 가장</u> 많이
	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순위 ( ), 2순위 ( ), 3순위 ( )

### [변수 A2A01~03]

	2015 예산배분율	
(1)	치안인프라구축 (예 : 경찰기동력 강화, 차량·피복·장비 관리,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 등)	32.32%
(2)	교통안전·소통확보 (예 : 교통안전교육홍보, 교통과학장비 관리, 도로교통공단출연, 교통행정전산화)	22.27%
(3)	사회질서유지 (예 : 경비경찰활동, 의경운영 및 관리, 재난안전관리, 치안정보활동 등)	18.74%
(4)	범죄수사활동 (예 : 현장수사, 범죄감식 및 관리, 과학수사시스템구축, 사이버범죄수사 등)	11.69%
(5)	범죄예방 및 사회적 약자보호 (예 : 생활안전활동, 여성청소년보호, 성폭력범죄 수사 지원, 아동안전지킴이 등)	5.20%
(6)	국가안보확보 (예 : 보안수사, 외사경찰, 해외치안협력강화, 국제치안, 대테러상황관리 등)	4.97%
(7)	전문경찰양성 (예 : 경찰대학, 경찰보수 교육, 신임순경 교육, 수사경찰 전문 교육 등)	4.82%
	총계	100%

1순위 ( ), 2순위 ( ), 3순위 ( ), 4순위 ( )

## [변수 A2B01~04]

	검찰	2015 예산배분율
(1)	수사일반 (예 : 수사활동, 수사일반, 속기사운영, 특별수사 등)	26.76%
(2)	검찰청시설운영 (예 : 검찰청시설운영, 노후시설개선, 임차보증금 등)	15.30%
(3)	검찰업무정보화(정보화) (예 : 검찰업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개선, 전산장비 구입 등)	12.30%
(4)	형사보상 (예 : 형사보상금 지급, 무죄비용보상금 지급 등)	8.73%
(5)	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(정보화) (예 : 첨단범죄 수사 및 분석 시스템 구축, 첨단범죄수사 운영 및 지원 등)	6.40%
(6)	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(예 : 지식재산권·보이스피싱 단속, 증권범죄합동수사단, 묻지마범죄 단속 등)	5.31%
(7)	형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(예 : 재산형집행활동, 범죄수익환수, 형집행부서 업무 지원 등)	4.68%
(8)	검찰수사지원 (예 : 수사활동, 연구활동 및 교육, 인력선발 및 관리 등)	4.11%

	검찰	2015 예산배분율
(9)	영상녹화 등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(예: 과학수사 및 DNA-DB 시스템 개선 및 유지)	2.77%
(10)	안전비리 등 민관유착사범비리단속 (예 : 보조금비리 수사, 특별수사 지원 등)	2.58%
(11)	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(예 : 국외훈련, 범죄인인도 등)	2.54%
(12)	공안수사 (예 : 선거사범단속, 국가안전위해사범단속, 공안수사반운영, 불법집단행동사범단속 등)	2.34%
(13)	성범죄등4대악사범단속 (예 : 성폭력·가정폭력사범, 부정식품사범, 학교폭력사범 단속 등)	2.33%
(14)	공소유지 (예 : 공판활동, 공판중심주의 대응 지원 등)	1.92%
(15)	마약수사 (예 : 마약사범단속, 아태지역마약조정센터,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 등)	1.48%
(16)	국제형사협력지원(ODA) (예 : 국제마약퇴치,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위원회 부담금 등)	0.28%
(17)	형사법정비 (예 :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, 형사실체법 연구, 형사사법기관시찰 및 자료 수집 등)	0.18%
	총계	100%

1순위 ( ), 2순위 ( ), 3순위 ( )

## [변수 A2C01~03]

	법원	2015 예산배분율
(1)	사법업무전산화 (예 : 사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, 전산망 운영 및 관리, 데이터센터 유지보수비 등)	28.88%
(2)	국선변호료 지원 (예 : 국선변호료, 국선변호인 선정결정 송달료 등)	23.16%
(3)	법정중심재판 지원 (예 :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송달료, 증인여비 및 일당, 공공요금, 증인지원센터 등)	18.83%
(4)	전자소송 (예 : 전자소송업무시스템 및 전자소송시스템 운영, 고도화 등)	11.72%
(5)	형사재판업무 지원 (예 : 송달료, 신문공고료, 감정유치명령 의료비, 재정신청, 인신보호 등)	7.02%
(6)	국민참여재판 지원 (예 : 배심원 일당, 사법참여기획단, 그림자배심 프로그램, 송달료 등)	3.99%
(7)	사법서비스 향상 및 능력개발 (예 : 국내학위과정 위탁교육, 직원연수, 의료실 설치, 시민사법참여활동 등)	2.92%
(8)	사법형사업무전산화 (예 : 형사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,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)	2.03%
(9)	양형제도개선 지원 (예 : 양형정책·심리절차 연구, 양형기초자료 수집·조사 및 양형기준 적용현황 점검 등)	1.46%
	총계	100%

1순위 ( ), 2순위 ( ), 3순위 ( )

## [변수 A2D01~03]

	교정	2015 예산배분율
(1)	수용관리 (예 : 수용자 의료비, 건강보험료, 연료비, 치약·비누·화장지 등 생활용품비 등)	45.32%
(2)	교정기관 공공요금 (예 : 전기세 및 수도세 등)	24.23%
(3)	교도소시설 장비 운영 (예 : 노후시설 보수, 전기·소방·도시가스 시설 유지비, 취사·세탁·보안 장비 등)	15.35%
(4)	교도소 행정지원 (예 : 민영교도소 운영, 조리원 및 시설관리인 보수, 사업추진비 등)	7.91%
(5)	교정교화 (예 :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, 문화프로그램, 정보화교육, 교화활동비 등)	3.93%
(6)	교정시설 현대화 (예 : 전자경비시스템 유지관리, 화장실 양변기 설치, 수용거실 출입문 자동화 사업 등)	3.27%
	총계	100%

1순위 ( ), 2순위 ( ), 3순위 ( )

### [변수 A2E01~03]

보호관찰		2015 예산배분율
(1)	갱생보호활동 (예 :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업비, 인건비, 민간 갱생보호 허가법인 사업비 등)	30.21%
(2)	소년원생수용 (예 : 교과교육, 직업능력개발훈련, 치료재활교육, 장비 및 연료비 등)	19.01%
(3)	특정범죄자 위치관리 (예 : 비상출동 및 신상정보 등록직 보수, 전자장비 유지비, 전자발찌 구입 등)	12.94%
(4)	보호관찰활동 (예 : 특정업무경비, 일반수용비, 차량비, 재범방지 연구개발비 등)	10.86%
(5)	치료감호자 수용관리 (예 : 지정법무병원 내 사법병동 운영 지원 및 의료비, 구료비 등)	7.62%
(6)	보호관찰소 시설운영 (예 : 임차료, 공공요금, 시설장비 유지비 등)	6.11%
(7)	청소년비행예방 (예 :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 및 설치·증설 등)	6.05%
(8)	법질서 바로세우기 및 법교육 활동지원 (예 : 공익 광고, 캠페인, 법체험교육, 모의재판대회, 연구개발비 등)	4.72%
(9)	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시설운영 (예 : 안전점검수수료, 공공요금, 청소용역비,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등)	2.48%
	총계	100%

П

## 주요 쟁점 정책에 대한 인식

Q1 현재 검찰은 법무부에 속한 기관으로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법무부의 예산 편성에 속해 있습니다. <u>귀하는 검찰 예산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</u>

#### [변수 B1]

-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
-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
- ③ 보통이다
- ④ 필요하다
- ⑤ 매우 필요하다
- Q2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예산편성권이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. <u>귀하는 법원 예산 편성의 독립</u>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#### [변수 B2]

-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
-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
- ③ 보통이다
- ④ 필요하다
- ⑤ 매우 필요하다
- Q3 판결오류, 인권 등의 문제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있습니다. <u>귀하는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십니까?</u>

#### [변수 B3]

- ① 폐지에 찬성한다
- ② 폐지에 반대한다
- Q4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었는데, 검찰의 특수수사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. <u>귀하는 대검 중수부의 폐지는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?</u>

#### [변수 B4]

① 적절했다

- ② 적절하지 않았다
- Q5 최근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(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)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귀하는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십니까?

#### [변수 B5]

- ① 신설에 찬성한다
- ② 신설에 반대한다

Q11 우리 헌법은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[변수 B11, B11A]

- ① 현행대로 검사만이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
- ② 사법경찰관에게도 영장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
- ③ 기타( )
- Q12 사건 폭주에 따른 상고심(대법원 등에 의한 최종 재판)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<u>'상고법원 설치 방안'과 '대법</u> 관 증원 방안'이 충돌하고 있습니다. 귀하는 어떤 방안을 지지 하십니까?

[변수 B12, B12A]

1	상고법원	선치	바이
(1)			7,71

- ② 대법관 증원 방안 ③ 기타(
- )

Ш

# 형사사법기관의 성과관리체계 및 성과지표 관련

먼저 주어진 법무부, 대법원, 및 경찰청의 성과지표 자료를 살펴보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.

Q1 법무부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(법학/비법학 전공 전문가 공통)

Q1-1 성과관리 체계

[변수 C1C01~05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기관의 성과목표는 기관의 <u>주요업무</u> 를 잘 반영하고 있다.	1)	2	3	4	(5)
(2)	기관의 성과목표는 <u>국민의 관심사항</u> 을 잘 반영하고 있다.	1	2	3	4	(5)
(3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<b>명확하게 설정</b> 되어 있다.	1	2	3	4	(5)
(4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잘 <u><b>연계</b></u> 되어 있다.	1	2	3	4	(5)
(5)	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<u>성과측정방식</u> 이 적절하다.	1)	2	3	4	(5)

## Q1-2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

## [변수 C2C01~09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<u>용이한 지표</u> 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)	2	3	4	(5)
(2)	조직전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<b>지엽적인 목표</b> 를 추구하거나 최선의 목표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.	1)	2	3	4	(5)
(3)	장기적이기보다는 <b>단기적인 성과달성</b> 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4)	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5)	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(지표)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6)	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만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.	1	2	3	4	(5)
(7)	성과지표를 제시할 때, 정량적 지표보다는 <b>정성적 지표</b> 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	1)	2	3	4	(5)
(8)	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)	2	3	4	(5)
(9)	도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)	2	3	4	(5)

# Q2 대법원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(법학 전공 전문가용)

## Q2-1 성과관리 체계

## [변수 C1A01~05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기관의 성과목표는 기관의 <u>주요업무</u> 를 잘 반영하고 있다.	1	2	3	4	(5)
(2)	기관의 성과목표는 <b>국민의 관심사항</b> 을 잘 반영하고 있다.	1	2	3	4	(5)
(3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<b>명확하게 설정</b> 되어 있다.	1	2	3	4	(5)
(4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잘 <b>연계</b> 되어 있다.	1	2	3	4)	(5)
(5)	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<u>성과측정방식</u> 이 적절하다.	1)	2	3	4	(5)

## Q2-2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

## [변수 C2A01~09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<u>용이한 지표</u> 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)	(5)
(2)	조직전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<b>지엽적인 목표</b> 를 추구하거나 최선의 목표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3)	장기적이기보다는 <b>단기적인 성과달성</b> 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4)	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5)	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(지표)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6)	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만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.	1	2	3	4	(5)
(7)	성과지표를 제시할 때, 정량적 지표보다는 정성적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	1	2	3	4	(5)
(8)	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	2	3	4	(5)
(9)	도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	2	3	4	(5)

# Q3 경찰청 성과관리 및 성과지표 관련 설문 (비법학 전공 전문가용)

# Q3-1 성과관리 체계

## [변수 C1B01~05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기관의 성과목표는 기관의 <u>주요업무</u> 를 잘 반영하고 있다.	1)	2	3	4	(5)
(2)	기관의 성과목표는 <b>국민의 관심사항</b> 을 잘 반영하고 있다.	1	2	3	4	(5)
(3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<b>명확하게 설정</b> 되어 있다.	1	2	3	4)	(5)
(4)	기관의 목표-프로그램-단위사업-성과지표는 잘 <b>연계</b> 되어 있다.	1	2	3	4	(5)
(5)	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<u>성과측정방식</u> 이 적절하다.	1)	2	3	4	(5)

### Q3-2 성과지표의 설정 및 측정

#### [변수 C2B01~09]

문번	질문 내용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	그렇다	아주 그렇다
(1)	달성하기 쉽고 측정하기 <u>용이한 지표</u> 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)	2	3	4)	(5)
(2)	조직전체의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<u>지엽적인 목표</u> 를 추구하거나 최선의 목표보다는 차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.		2	3	4	(5)
(3)	장기적이기보다는 <b>단기적인 성과달성</b> 에 유리한 지표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.	1	2	3	4	(5)
(4)	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려는 경향이 있다.	1	2	3	4)	(5)
(5)	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업무(지표)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.	1)	2	3	4)	(5)
(6)	계량적으로 측정가능한 성과만을 중심으로 성과측정이 이루어진다.	1)	2	3	4)	(5)
(7)	성과지표를 제시할 때, 정량적 지표보다는 <b>정성적 지표</b> 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	1	2	3	4	(5)
(8)	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	2	3	4	(5)
(9)	도전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보다 더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다.	1	2	3	4	(5)

IV 인적사항

Q1 귀하의 성별은?

[변수 D1]

① 남성 ② 여성

Q2 귀하의 연령은?

[변수 D2]

만 \_\_\_\_세

Q3 귀하의 직장 또는 학교 소재 지역은?

[변수 D3]

① 서울 ③ 인천 ④ 대구 ⑤ 광주 ② 부산⑦ 울산 ⑥ 대전 ⑧ 세종 ⑨ 경기도 ⑩ 강원도

 ① 경상북도
 ② 경상남도
 ③ 충청북도
 ④ 충청남도

 ⑤ 전라북도
 ⑥ 전라남도
 ① 제주

① 형사법	② 범죄학	③ 경찰학	④ 기타(	)	
Q6 귀하의 정치적	성향은 어디에 가까	우십니까?			
[변수 D6]					
진보 <b>◆</b>		중도			보수
①	2	3		4	(5)
Q7	(영술 시시하십니까? ② 더민주당 ⑥ 기타(	③ 국민의당	④ 정의당	<del>j</del>	
VI ohylel	으로 국가기관의 예산	난과 관련하여 하	고 싶은 [	말씀이 있다면 자	유롭게 써주십시오.
[변수 E1]					

설문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Q4 귀하가 속한 기관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까?

① 있음 ② 없음 ③ 해당사항 아님

[변수 D4]

[변수 D5, D5A]

Q5 귀하의 전공분야는?